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(안)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(안) 소개

(20.6.30,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)

□ 논의배경

○ 「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안」('20.5.13,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)과 그 동안의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매뉴얼 개정 소요 발생

○ 「공동관리규정」 적극해석을 통한 코로나19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부처별 코로나 대응지침의 공통사항을 「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」을 마련하여 표준매뉴얼 부록(권고사항)으로 소개

□ 주요 개정사항

○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·선정·협약

- <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표준화(안)> 본문 삭제 (매뉴얼 27쪽)

○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·정산

-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(종이영수증의 전자문서화 처리 확대) (매뉴얼 54쪽)
- 연구개발비 지출방식(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) 제한 완화 (매뉴얼 55쪽)
-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(매뉴얼 56쪽)
-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(매뉴얼 58, 74쪽)
- 연구비 정산시 서면 증빙 부가제출 개선 (매뉴얼 58쪽)
- 대학강사 인건비 지급 (매뉴얼 63쪽, 65~67쪽 <표 11>, 117쪽)
- 연구용 S/W 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(매뉴얼 73쪽)
-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 · 간소화 (매뉴얼 77쪽)
-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·명확화 (매뉴얼 78쪽)
-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(매뉴얼 80쪽, <표 21>)

※ 의견수렴 :전문기관 회의(6.11), 연구제도협의회(6.23), 부처 협의(6.22~6.29)

현행	개정안	사유
제2장 제1절 기획·공고 (27p) <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표준화(안) > ○ 부처별 운영 중인 규정의 참여자격 '지원제외조건'에 대한 7개 공통기준을 도출하고 내용을 표준화 ○ 우수 기술을 보유한 소자본 벤처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를 제외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참여 요건 완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표준화(안) ① 주관연구기관, 협동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 ③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	제2장 제1절 기획·공고 < 삭 제 > ※ 추후 기업의 부채비율 산정에 관한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추진	표준안은 권고안이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정없이 적용되고 있고, 범부처 공통사항이 아니므로 삭제

현행	개정안	사유
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(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)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(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)		

<table>
<tr><th>현행</th><th>개정안</th><th>사유</th></tr>
<tr><td>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※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표 6> 연구비 집행 증명자료(54p)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증 명 자 료</th></tr><tr><td>지출 등 결의서</td><td>지출결의서, 수입결의서</td></tr><tr><td>영수증서</td><td>카드매출전표*, 전자세금계산서*, 계좌이체내역서, 구매확인서(검수조서)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등</td></tr><tr><td>기타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</td><td>견적서, 계약서, 청구서 등</td></tr></table>※ 영수증서 중 카드매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 등은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(종이로 출력하여 보관 불요. 단, 영수증서가 카드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종이 형태로 보관 필요)
※ < 신 설 ></td><td><표 6> 연구비 집행 증명자료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증 명 자 료</th></tr><tr><td>지출 등 결의서</td><td>지출결의서, 수입결의서</td></tr><tr><td>영수증서</td><td>카드매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, 계좌이체내역서, 구매확인서(검수조서)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등</td></tr><tr><td>기타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</td><td>견적서, 계약서, 청구서 등</td></tr></table>~~※ 영수증서 중 카드매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 등은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(종이로 출력하여 보관 불요. 단, 영수증서가 카드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종이 형태로 보관 필요)~~
※ 연구비 집행 증명자료는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“전자문서”인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관(종이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. 단, 연구</td><td>영수증서의 전자적 형태 제출을 통한 행정부담 경감
(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, 자문회의, 20.5.13)</td></tr>
</table>

현행	개정안	사유
	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객관적으로 진위확인이 불가한 수행기관 내부자료(품의서, 견적서, 거래명세서 등)는 원본을 보관	
제3장 연구활동비 정의 (73P) –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(단계) 2개월 이전에 도입(검수완료)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(컴퓨터, 프린터,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) 및 소프트웨어(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) 구입·설치· 임차· 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 ※ < 신 설 >	–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(단계) 2개월 이전에 도입(검수완료)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(컴퓨터, 프린터,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) 및 소프트웨어(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) 구입·설치· 임차· 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 ※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용 S/W라이선스는 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경비 집행 인정 (다만, S/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에 한함) ※ 비영리기관의 경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용 S/W 라이선스사용료를 모아 기관단위로 통합하여 구매 · 관리 가능(기관단위 연구용 S/W라이선스 통합구매를 위해 기관장 명의로 과제별 비용을 분담한 확인 공문서 등을 발송하고, 그 비용을 기관이 흡수해야 함)	연구용 S/W라이선스 비용 집행 합리화(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방안, 자문위, 20.5.13)
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	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	

현행	개정안	사유
제1절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2. 연구개발비 관리**(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)** 다. 연구개발비 사용(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) ◉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계정의 연구비 카드로 발급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형 카드로 연구비를 관리해야 함 – 이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은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되,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 사용이 가능 < 신 설 >(55p) ◉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– 다만,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이 가능함	제1절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2. 연구개발비 관리**(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)** 다. 연구개발비 사용(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) ◉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계정의 연구비 카드로 발급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형 카드로 연구비를 관리해야 함 – 이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은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되,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 사용이 가능 ※ 연구시설 · 장비비, 연구활동비, 연구재료비 지출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강제하여서는 안됨.(다만 연구시설 · 장비비를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등 최소한의 집행증명문서 구비 필요) ◉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– 다만,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이 가능함	연구개발비 사용방식 제한완화 (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자문위, 20.5.13)

현행	개정안	사유
◉ < 신 설 > (56p)	◉ 협약기간 시작일을 협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,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연구비 지급일까지 연구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연구비 선집행 가능 – 비영리기관의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관 자체재원(해당연도 해당과제 간접비 규모 內)을 활용한 연구비 선집행 가능하나 연구시설 · 장비비 및 재료비에 한함	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선집행 근거 마련 (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자문위, 20.5.13)
◉ 주관연구기관은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	◉ 주관연구기관은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	
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제2절 연구개발비 정산 1.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(58p) ◉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,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함	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제2절 연구개발비 정산 1.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◉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, 연구기관의 장은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함	

현행	개정안	사유
–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•직접비의 5%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※ 5% 초과 계상 가능하나 5% 초과 집행 시 정산실시 -- 중 ----------략 ---------- ◦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(카드매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 등)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아야 하고 별도로 종이영수증 철을 요청하여서는 안 됨 < 신 설 > (58P)	– 직접비의 5%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※ 5% 초과 계상시 정산 실시(5%초과 집행 또는 5% 이하 집행을 불문) 5% 이하로 계상하고, 5%이하로 집행한 경우만 정산 면제 -- 중 ----------략 ---------- ◦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(카드매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 등)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아야 하고 별도로 종이영수증 철을 요청하여서는 안 됨 ◦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정산 시 과도한 서면 증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, 연구비 시스템에서 온라인 정산을 실시하되, 증빙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에만 서면자료를 요구하여야 함	정산면제 기준 명확화 (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자문위, 20.5.13) 과도한 서면증빙 요구 개선 (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자문위, 20.5.13)
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제2절 연구개발비 정산	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제2절 연구개발비 정산	

현행	개정안	사유
3.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나.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(인건비 계상기준) – 단,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* < 신 설 > (64P) –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, 연구기관은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•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금액(참여율100% 기준금액)에서 기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 할 수 있음	3.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나.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(인건비 계상기준) – 단,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 및 강사*는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. * 고등교육법 제14조의2(강사) 및 제17조(겸임교원 등)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을 말하며,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'직장가입자가 아닌 자'인 경우만 인정 –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, 연구기관은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•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금액(참여율100% 기준금액)에서 기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 할 수 있음	강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허용 여부 명확화(연구재단 요청사항)
<표 9>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외부 ⑦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	<표 9>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외부 ⑦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	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등의 인건비 지급 내용 추가에 따른

현행		개정안		사유
인건비	⑧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⑨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,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,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⑪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,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⑫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(급여)를 받고 있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, 해당 인건비(급여)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⑬박사후연구원의 경우,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	인건비	⑧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⑨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,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,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⑪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,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⑫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 및 강사의 경우,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⑬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(급여)를 받고 있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, 해당 인건비(급여)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⑭박사후연구원의 경우,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	부당집행기준 외부인건비 내용 추가
<표 10>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		<표 10>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		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등의 인건비 지급 내용 추가에 따른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 항목 추가
외부 인건비	① 근로계약서(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)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급여명세서(월별) ⑤ 계좌이체증명	외부 인건비	① 근로계약서(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)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 및 강사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(월별) ⑥ 계좌이체증명	

<table>
<tr><th>현행</th><th>개정안</th><th>사유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
<표 11>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(66P)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세 부 내 용</th></tr>
<tr><td>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</td><td>• 「학생인건비 계상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」에 따라 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
– 월급여(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) × 참여기간(개월) × 참여율(%)
–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(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)
–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
– 대학(원)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, 총 과제참여율 100%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
–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(급여)를 받고 있는 경우, 해당 인건비(급여)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
＊ < 신 설 > (68P)
– 대학(원)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(연) 및 특정(연)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, 총 과제 참여율 100%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
• 연구책임자·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
※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
– 「학생인건비 계상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」에 따라 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100만원 이상, 석사과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표 11> 학생인건비 계상기준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세 부 내 용</th></tr>
<tr><td>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</td><td>• 「학생인건비 계상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」에 따라 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
– 월급여(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) × 참여기간(개월) × 참여율(%)
–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(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)
–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
– 대학(원)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, 총 과제참여율 100%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
–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(강사인건비 제외*)를 받고 있는 경우, 해당 인건비(급여)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
＊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(강사) 및 제17조(겸임교원 등)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의 인건비를 말하며,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'직장가입자가 아닌 자'인 경우만 인정
– 대학(원)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(연) 및 특정(연)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, 총 과제 참여율 100%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
• 연구책임자·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
※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</td></tr>
</table>
</td><td>과정생 이면서 시간강사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급여부 명확화(연구재단 요청사항)</td></tr>
</table>

현행	개정안	사유
정은 월180만원 이상, 박사과정은 월250만원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함	– 「학생인건비 계상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」에 따라 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100만원 이상, 석사과정은 월180만원 이상, 박사과정은 월250만원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함	
학생인건비 특기사항 하단 < 신 설 > (67P)	–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타 근로계약 여부를 확인하되,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한 단기 근로*에 따른 소득은 학생연구원 참여율 산정 시 제외 *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등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단기근로임을 인정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 시 해당 업무가 단시간 근로임을 별도 서약하는 방식으로 인정 가능	통합관리지정지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명확화(대학 요청사항)
연구활동비 (74p) –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*의 연구활동비를 제19조 제12항 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	연구활동비 –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*의 연구활동비를 제19조 제12항 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~~직접~~	

<table>
<tr><th>현행</th><th>개정안</th><th>사유</th></tr>
<tr><td>비(현금 및 현물)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
※ 5%초과 계상 가능하나 5%초과 집행 시 정산 실시
* 회의비, 식대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</td><td><s>비(현금 및 현물)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</s>
– 직접비의 5%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
※ 5% 초과 계상시 정산 실시(5%초과 집행 또는 5% 이하 집행을 불문)
5% 이하로 계상하고, 5%이하로 집행한 경우만 정산 면제
* 회의비, 식대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</td><td>정산면제 기준 명확화
(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자문위, 20.5.13)</td></tr>
<tr><td><표 18> 연구활동비 정산시 제출서류 (76p)
<table><tr><td>회의비</td><td>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
* 단, 1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하의 회의비도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, 일시, 장소, 참석자 등은 명기
② 카드매출전표</td></tr></table></td><td><표 18> 연구활동비 정산시 제출서류
<table><tr><td>회의비</td><td>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
* 단, 1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, 회의록 제출없이 영수증만 제출하며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, 일시, 장소, 참석자 전원명단 등은 명기(참석자 전원 서명날인은 폐지)
② 카드매출전표</td></tr></table></td><td>회의비 집행 시 증명서류 명확화
(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자문위, 20.5.13)</td></tr>
<tr><td><표 17>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기준 (75P)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부당집행 기준</th></tr><tr><td>회의비, 식대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</td><td>①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(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*)
* 2014. 8. 12 이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
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</td></tr></table></td><td><표 17>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기준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부당집행 기준</th></tr><tr><td>회의비, 식대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</td><td>① 10만원 초과 회의비의 경우,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
* 단,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제출 시 부당집행으로 보지 않으나, 지급 신청 시</td></tr></table></td><td>회의비 집행 시 증명서류 명확화
(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자문위, 20.5.13)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현행</th><th>개정안</th><th>사유</th></tr>
<tr>
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부당집행 기준</th></tr>
<tr><td>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</td><td>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
④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
⑤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
⑥ 출장비(식대 포함된 경우)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
⑦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부당집행 기준</th></tr>
<tr><td>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</td><td>회의개요(회의목적, 일시, 장소, 참석자 전원명단)는 명시 필요
~~* 2014. 8. 12 이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~~
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
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
④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
⑤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
⑥ 출장비(식대 포함된 경우)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
⑦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연구재료비 (78p)

<신설></td>
<td>연구재료비

특이사항
– 연구재료비와 연구시설·장비비의 분리로 연구재료비의 경우 유연한 집행을 허용하고자 협약 종료전까지 구매 완료한 재료비는 인정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
<표 21>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(80P)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부당집행 기준</th></tr>
<tr><td>연구수당</td><td>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(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)
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
<표 21>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부당집행 기준</th></tr>
<tr><td>연구수당</td><td>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(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)
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현행</th><th>개정안</th><th>사유</th></tr>
<tr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부당집행 기준</th></tr>
<tr><td></td><td>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
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
⑤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[연구수당 지급액×(연구수당 집행비율-직접비 집행비율*- $\frac{20}{100}$)]
* 통합 EZbaro 적용사업 :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
* 통합 RCMS 적용사업 :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
⑥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
⑦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
⑧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부당집행 기준</th></tr>
<tr><td></td><td>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
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
⑤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[연구수당 지급액×(연구수당 집행비율-직접비 집행비율*- $\frac{20}{100}$)]
* 통합 EZbaro 적용사업 :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(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)
* 통합 RCMS 적용사업 :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
⑥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
⑦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
⑧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</td></tr>
</table>
</td><td>연구재단 요청사항</td></tr>
<tr><td>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연구관리제도
제1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
2. 학생인건비 사용방법 (114p)

-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</td><td>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연구관리제도
제1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
2. 학생인건비 사용방법

-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현행	개정안	사유
•대학(원)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~ •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(급여)를 받고 있는 경우 ~ ● <신설>	•대학(원)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~ •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(급여)를 받고 있는 경우 ~ •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타 근로계약 여부를 확인하되,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한 단기 근로*에 따른 소득은 학생연구원 참여율 산정 시 제외 (114P) *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등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단기근로임을 인정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 시 해당 업무가 단시간 근로임을 별도 서약하는 방식으로 인정 가능	통합관리지정지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명확화(대학 요청사항)

부록 :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

1. 수립배경

○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현행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이하 '공동관리규정')」의 일반적인 적용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
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중앙행정기관(이하 '부처')에서는 현행 「공동관리규정」 및 소관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자체지침*을 마련하여 운영 중

* 과기정통부 : 코로나19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고지 등
산업부 :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
중소부 :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등

○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지침의 내용 중 모든 부처에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공통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

⇒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매뉴얼 마련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 공백과 연구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 새롭게 다가올 기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확충

2. 적용범위 및 방법

○ 적용부처 :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

○ 적용과제 :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(이하 '과제') 중 2020년도 진행중인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

- 다만, 정부납부기술료는 2020년도 납부(또는 납부예정) 금액에 대해 적용

○ 적용기간 : 동 지원지침 적용을 고지한 날부터 적용과제의 해당연차 종료일까지

* 추후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

- 한편, 추후 다른 감염병의 전 세계 확산 등 경제·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발생 시에도 비상 매뉴얼로 활용

○ 적용방법 : 동 지원지침을 참고하여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을 체결(협약 미체결 과제)하거나 변경(협약 기체결 과제)

- 우선 부처에서 연구개발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고,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(2020년 상반기 내 변경을 권고)

3. 부처별 자체지침과의 관계

○ 동 지원지침은 권고사항이며, 부처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고, 부처별 자체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지침을 우선 적용

4. 주요내용

가. 과제 공고 및 신청

○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폐쇄,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의 격리 등으로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신청이 곤란할 경우 부처는 과제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

○ 과제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,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방법을 적용

나. 과제 선정

○ 과제 선정평가는 서면·화상 등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,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평가 실시

○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평가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「공동관리규정」 [별표1] 제3호에 따라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완화하여 적용

다. 과제 협약

○ 부처 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·내용·기간 및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「공동관리규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약을 변경

○ 「공동관리규정」 제10조제1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협약은 전자문서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, 협약당사자의 협의결과에 따라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 방법으로 체결

라. 연구개발비 지급·관리

○ 과제 선정 통보 이후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연구개발비 선집행을 허용

○ 참여기업 중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서는 「공동관리규정」 제1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[별표1의4]와 달리 적용

< 총연구개발비 중 부처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>

	일반적 적용		비상 매뉴얼 적용
•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	50% 퍼센트 이내		좌동
•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	60% 퍼센트 이내		65% 퍼센트 이내
•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	75% 퍼센트 이내		80% 퍼센트 이내
•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		➡	
- 중소기업의 비율이 2/3 이상인 경우	75% 퍼센트 이내		80% 퍼센트 이내
- 중소기업의 비율이 2/3 미만이고 대기업의 비율이 1/3 이하인 경우	60% 퍼센트 이내		65% 퍼센트 이내
• 그 밖의 경우	50% 퍼센트 이내		좌동

< 총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 부담 기준 >

	일반적 적용		비상 매뉴얼 적용
•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	15% 퍼센트 이내		좌동
•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	13% 퍼센트 이내	➡	10% 퍼센트 이내
•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	10% 퍼센트 이내		
현금 부담 납부기간	협약종료 3개월 전		협약종료 전까지 허용

○ 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「공동관리규정」 [별표2] 중 인건비 계상기준 제4호라목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지급 허용

○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*, 감염병 발생에 따라 과제 수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**,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 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 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*** 등을 연구개발비 정산에서 폭넓게 인정

* 예: 손세정제, 마스크, 열화상카메라 설치·운영비, 화상회의장 구축·운영비 등

** 예: 기관폐쇄에 따른 연구중단·재개 비용(사전조치 비용 포함) 등

*** 예: 출장여비 취소 수수료, 회의 취소 위약금 등

○ 단년도 협약을 체결하는 계속과제에 대해 「공동관리규정」 제12조의2제3항 제2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이 부진하더라도 부처에서 차년도 이월을 적극적으로 승인

※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는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부처의 승인없이 연구개발비 이월

마. 결과 보고 및 성과 평가

○ 과제 중간·최종·추적평가는 서면·화상 등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,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평가 실시

○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평가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「공동관리규정」 [별표1] 제3호에 따라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완화하여 적용

○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검토항목을 마련하여 중간·최종·추적평가 시 반영

바.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사용

○ 「공동관리규정」 제22조제5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하고, 그 비율·방법 등에 관하여 부처별 특성에 맞게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적용

○ 「공동관리규정」 제22조제5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, 그 기간·방법 등에 관하여 부처별 특성에 맞게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적용